

October 19, 2026

2026년 9월 환경 주요 정책 동향 소개

2026년 9월 환경 분야 주요 정책 동향을 소개해 드립니다.

BKL은 2024년 10월부터 매월 환경 분야 주요 정책 동향을 소개하는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는 지난 한 달간의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의 최근 정책 동향, 기후부 인사 동향 및 환경 관련 법령 및 고시 등의 최근 개정 현황, 입법(행정) 예고 등 주요 입법 동향으로 구성됩니다.

I. 기후부 2027년 예산 정부안 주요 내용

1. 기후부 2027년 정부 예산(안)

■ 2027년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

-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9. 1.)하고, 국회에 제출(9. 3.)

-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역대 최대인 12.8% 증가한 **820조 9천억 원**(’26 예산 727.9조 원)
-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6년 51.6%에서 3.3%p 하락한 **48.3%**로 전망
- 정부 중점 투자 분야는 3대 메가프로젝트 + AI 총력 지원,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 모두의 성장, 국민안전·평화

■ 2027년 기후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미래대응기금 사업 포함)은 올해보다 18.3%(3조 9,737억 원) 늘어난 25조 7,319억 원으로 편성

● 기후부 중점 투자 분야

- 첨단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전력·용수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실현을 위한 **담대한 에너지 대전환**
- 국민이 체감하는 **녹색전환**
- 기후 재난으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 향후 예산안 심사 국회 일정

- 상임위 소관별 심사(9월~) 및 **예결위 전체회의 심사·의결**(~11월)
- 2027년 예산안 **본회의 처리**(‘26. 12. 2. 법정시한)

2. 기후부 중점 투자 분야

■ 전력·용수 기반시설(인프라) 확충(1조9,351억 원)

- **전력 분야에 1조 5,489억 원, 용수 분야에 3,862억 원**을 편성
 - **수요 유치형 변전소**를 구축하고, 기존 선로를 최대한 활용(658억 원)
 - **송전단 에너지저장장치**(7,724억 원), 가상송전망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24억 원), **전기품질 안정화** 설비 구축(360억 원)
 - **전력계통**을 적기에 구축
 - 신규 **전력망 지중화** 확대(27억 원),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설치 지원(196억 원),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 강화(3,500억 원), **한국전력공사 출자금액** 확대(5,000억 원)
 -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수 확보**를 위한 예산투자 강화
 - **호남권** 반도체산단 용수공급(1,196억 원), **충청권**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용수공급(86억 원), **한국수자원공사** 출자(2,500억 원)
 -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내 **공공폐수 처리** 예산도 편성(85억 원)

■ 에너지 대전환으로 탄소중립 달성

-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은 **1.5조 원** 규모로 2배 확대·편성
 - **공장지붕 태양광** 용자 예산은 5,440억 원으로 증액(116MW→512MW)
 - **햇빛소득마을**의 용자방식을 **이차보전방식**으로 전면 전환(285억 원), 연계형 **에너지저장장치** 구축사업 확충(21개소→50개소)
- **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예산도 올해 대비 약 **40% 확대**(2,967억 원)
 - **가정형 태양광** 예산은 750억 원(10만 가구→**20만 가구**) 편성
- **미래 에너지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도 강화

- 차세대 태양광 탠덤전지 조기 상용화 및 **풍력발전 소재·부품** 고도화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투자를 확대(2,058억 원)
-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조 기술개발과 **기반시설 구축** 지원(235억 원)

■ 녹색전환 지속 추진

- 국민 생활과 경제 전반의 **녹색전환에 투자**를 강화
 - **역대 최대** 규모의 **전기차 보급** 예산을 편성(2조 1,403억 원)
 - 보조금 지원 물량 **43만대** 확대, 영업용 차량 전환지원금 도입
 - **배달용 전기 이륜차** 구매 보조금 혜택을 50%로 확대(230억 원)
 - 전동트랙터 등 **무공해 농업기계** 전환 시범사업 추진(10억 원)
- **난방·열수요**를 전기로 **전환**하기 위한 투자도 본격화
 - 히트펌프를 활용한 열에너지 전기화 사업 약 **5.5배 확대**(859억 원)
 - 공동주택 실증까지 사업 범위 넓혀 **가스배관 없는 아파트** 구현
- 수계기금 활용한 지역주민 **재생에너지 사업**은 4대강 수계 확산(781억 원)
- 산업계의 **녹색·저탄소 전환** 자금 공급 규모 확대(10.6조 원)
 -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저탄소·친환경 전환**을 위한 전환채권 지원(예산 15억 원, 공급규모 7,500억 원)을 추가
 - **지방정부**의 녹색 기반시설 확충을 뒷받침하는 **녹색지방채** 지원사업(예산 12억 원, 공급규모 3,000억 원)을 시범적으로 추진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냉매 전환** 지원사업도 착수
 -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낮은 **자연냉매** 등을 사용하는 기기로 **교체**하려는 **사업장**(40개소) 설치 비용 지원(200억 원)
 - **자동차 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소부품사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전과정평가(LCA)** 지원을 대폭 확대(191억 원)

■ 기후 재난으로 국민 보호

- 강남역·광화문 **대심도 빗물터널**과 도림천 일대 **지하방수로** 설치 사업 투자 강화, '29년 홍수기 전 주요 공사 완료(815억 원)

- 이동식 해수담수화 시설(2개) 새롭게 도입(30억 원)
- 지하수 저류댐 등 지하수자원 확보 시설 확충(7개소, 249억 원), 가뭄에 취약한 취·양수시설 개선(788억 원)을 통해 안정적인 물 공급체계를 구축
- **녹조 문제해결을 목표로 수질개선을 위한 투자 확대(5,986억 원)**
 - 동강, 대청호, 소양호 등 **주요 수계 녹조 집중 관리** 사업 신설(1,048억 원)
 - 상수원 조류경보제 전 지점에 초분광센서를 활용한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 체계 도입(28개소)하여 녹조 사전 대응능력 강화(460억 원)
 -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확대(44개소→55개소)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효율개선(8개소) 등(3,956억 원)**
- **재난·유해 요인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도 착실히 확충**
 - 폐배터리에서 생산된 **재생원료**임을 인증하는 **전문기관 인증제도** 운영(8억 원)
 - 폐전기·전자제품 등에서 희토 영구자석을 **분리·선별**하는 해체·전처리 장비를 **재활용업체**에 지원(80억 원)
 - **풍력·태양광 설비**가 집중 설치되는 전남지역에 **미래폐자원 거점 수거센터**를 구축(23억 원)
 - 폐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민간 **재활용시설**(22개소)에 광학선별기 등 **고도화 설비** 도입도 지원(61억 원)
 -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책임을 적극 이행**
 -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가 **손해배상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피해자 피해 신속·적기 배상을 위해 **정부 출연금**을 대폭 **증액**(2,447억 원)
 - **사육곰 임시보호와 해외이송(35억 원), 월악산 국립공원 내 사육곰 보호·자연학습장** 조성을 위한 예산을 신규 편성(90억 원)
 - **국립공원 디지털 실물 스탬프투어 여권 발행 확대(15억 원)**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영세 사업장 중 시설개선이 시급한 고위험 사업장** 지원을 확대하여 화학사고 사전 예방(71억 원)

3. 기후부 주요 예산 개요

미래성장과 녹색전환을 위한 2027년 예산안

총예산

2026년 예산
21조 7,582억원+3조 9,737억원
+18.3% 증가2027년 예산안
25조 7,319억원

기본방향

메가프로젝트
전력·용수 공급으로
미래성장 기반 확충재생에너지, 전기화에
역대 최대 투자로
녹색전환 가속화환경현안에 대한
두터운 투자로
국민안심 환경 조성

중점투자사업

메가프로젝트 전력·용수 공급

1 전력공급 역량 강화

- 송전단ESS 구축(5,724억원) **신규**
- 가상송전망 설치(24억원) **신규**
- 전기요금 복지할인 지원(3,500억원) **신규**
- 한국전력공사 출자(5,000억원)

2 전력계통 인프라 확충

- 수유유치형 변전소 구축(658억원) **신규**
- 전기품질 안정화 설비(360억원) **신규**
-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196억원) **신규**
- 송전망 지중화(27억원) **신규**

3 용수 인프라 확충

- 호남권 용수 공급(1,196억원) **신규**
- 충청권 용수 공급(81억원) **신규**
- 호남권 폐수처리(85억원) **신규**
- 수자원공사출자(2,500억원)

담대한 에너지 대전환

1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 공장지붕 태양광(용자)(5,440억원, 343%+)
- 4대 정책입지 태양광(용자)(3,820억원, 55%+)
- 햇빛소득마일리지보전(285억원) **신규**

2 재생에너지 보급지원

- 가정형 태양광(보조금)(750억원) **신규**
- 건물 태양광(보조금)(416억원, 45%+)
- 주택 태양광(보조금)(172억원, 15%+)

3 초격차 에너지 R&D

- 재생e핵심기술개발(2,058억원, 43%+)
- 한국형 크리켄 배전망(140억원) **신규**
- SMR 제작지원(235억원, 25%+)

속도감 있는 녹색전환 이행

1 동력원 전기화

- 전기차 보조금(2조 1,403억원, 33%+)
- 전기 이륜차 보조금(230억원, 44%+)
- 무공해 농기계 보급(10억원) **신규**

2 난방·열수요 전기화

- 히트펌프 보급(859억원, 447%+)
- 주민소득증대 재생e사업(781억원, 1,431%+)

3 녹색산업 전환

- 친환경 냉매사용기기 교체(200억원) **신규**
- 녹색·전환금융(용자 3,000억원, 6%+)(이자보전 1,177억원, 27%+)(보조 1,714억원, 14%+)(펀드 2,230억원, 97%+)

기후재난 대응역량 강화

1 도시침수 예방

- 대심도 빗물터널(강남·광화문)(555억원, 179%+)
- 도림천 지하방수로(260억원, 1,138%+)

2 가뭄 대비 수자원 확보

- 이동식 해수담수화 시설(30억원) **신규**
- 지하수저류담(249억원, 108%+)
- 취·양수시설 개선(788억원, 68%+)
- 가뭄취약지도 개선(6억원) **신규**

3 녹조 원천 차단

- 국가주도 녹조집중관리(1,048억원) **신규**
- 녹조대응 수계기금 사업(522억원) **신규**
-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460억원, 69%+)
- 수질개선 SOC(3,956억원, 25%+)

지속가능한 안심환경 조성

1 채굴 없는 순환경제

-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 인증(8억원) **신규**
- 핵심광물 재활용시설(80억원) **신규**
- 고품질 재활용 기반 구축(61억원) **신규**

2 사람·자연 공존

- 사육곰 보호·해의이송(35억원) **신규**
- 월악산 자연학습장(사육곰)(90억원) **신규**
- 국립공원 스탬프투어(15억원, 650%+)

3 환경피해 회복 및 예방 강화

- 가습기살균제 정부출연금(2,447억원, 2,347%+)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71억원, 56%+)
-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58억원, 26%+)

II. 기후부 법령, 고시 등 개정 현황 (39건)

공포 (시행)일자	법령명 (고시 등)	주요 개정 내용	분 야
'26. 9. 29. (10. 8.)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가습기살균제 피해관리 센터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손해배상금 및 계속치료비의 지급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 - 대학 등록금 지원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세부 내용을 규정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산정과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의 미납자 명단 공표, 납부 의무 승계 미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	화학
9. 23. (27. 1. 1.)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환경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에서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외 - 환경교육사의 보수교육 주기를 단축 - 병역의무 등으로 6개월 이상 환경교육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보수교육을 유예	기타
9. 22. (10. 8.)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수문조사 전담기관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수행하는 사업 및 업무를 수문조사 자료의 생산·분석 및 품질 관리 지원 등으로 구체화 - 수문조사자가 3년마다 받아야 하는 재교육의 시간을 6시간 이상으로 개정	수질
9. 22. (27. 9. 23.)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 기후위기 취약성, 기후위험 및 기후 회복력 등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조사·예측 및 평가에 필요한 구체적 수단과 방안을 제시하여 기후 적응역량을 높이며,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여 기후 회복력 및 국민의 안전	기후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법안을 제정	
9. 22. (10.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기후시민회의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선정하는 100명 이상 300명 이하의 사람으로 구성하여 원칙적으로 월 1회 개최하도록 규정 - 국립기후과학원이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 체계의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 - 기후부 장관이 5년마다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을 실시하고 그 예측 결과 등을 반영한 공간정보 및 지도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규정	기후
9. 15. (9. 18.)	하천법 시행령	- 하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료 등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기 위한 산정 기준을 규정 -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의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 -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마련 - 기후부 장관이 하천공사로 인한 손실보상업무와 토지 등의 매수청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요율을 정비	수질
9. 15. (27. 3. 16.)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수출입 규제폐기물을 수입하여 재활용하는 시설로서 재활용 기술 및 환경 관리 수준이 우수한 재활용시설에 대한 수입폐기물 우수 재활용시설 인정 제도를 마련 - 국내 수요 및 재활용 가치 등을 고려하여 기후부 장관이 고시한 폐기물을 재활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36개월의 범위에서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 -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금지하거나	폐기물

		제한할 수 있는 목적에 국내 발생 폐기물의 재활용과 순환이용 촉진을 추가	
9. 15. (‘27. 3. 16.)	전원개발촉진법	-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의 설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 및 그 사업의 허가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자를 전원개발사업자의 범위에 포함시켜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	에너지
9. 15. (‘27. 3. 16.)	전기사업법	-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의 설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 제도를 도입 - 위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을 하려는 자는 기준을 갖춰 사업 단위별로 기후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 -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 지역주민이 시행하는 설비용량 1MW 이하의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우 다른 전기사업자에 우선하여 그 전기설비에 접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 - 전기사업에 관한 전기사업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	에너지
9. 15. (‘27. 1.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 정부 중심의 재생에너지 계약시장 제도를 도입하여 발전사업자·공공기관 등에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설정하여 이행하도록 규정 - 보급목표량 또는 보급의무량에 미달하는 경우 보급대체이행금 납부를 통해 그 미달분을 대체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 - 재생에너지 설비 의무보급자가 그	에너지

		보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기후부 장관이 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보급사업에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에 대한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사업'을 추가	
9. 15. (27. 9. 15.)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려는 발전사업자는 폐지계획을 수립하여 기후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유지와 재취업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사회적 영향 최소화 도모 -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 있는 기업, 노동자 및 지역사회의 안정과 정의로운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	에너지
9. 15. (12. 16.)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주민이 시행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 설비용량 1MW 이하인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우 다른 분산에너지사업자에 우선하여 배전망에 접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	에너지
9. 15.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 시행령	-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고시해야 하는 주요 내용 또는 변경 내용의 세부사항을 규정 - 침수방지시설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후관리 절차를 보완	수질

9. 15. (9. 18.)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행정청이 아닌 댐건설사업 시행자가 허가받지 않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경우 등에 대해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6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수질
9. 15. (27. 3. 16.)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 송전사업자 외의 자도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사업 완료 즉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송전사업자에게 양도하도록 규정	에너지
9. 8. (27. 3.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국가 온실가스 중장기감축목표 설정 원칙을 명시 - 2030년부터 2045년까지 5년 단위의 중장기감축목표를 상한과 하한의 범위 형태로 규정 - 정부는 온실가스 중장기감축목표의 이행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연구개발·설비투자 및 상용화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 - 기후변화와 관련된 과학적 사실과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현황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기후과학위원회를 두어, 중장기감축목표 등의 설정, 방법론 및 진전 동향 등에 관하여 분석·예측하도록 규정	기후
9. 28.	(정부승인차액 계약 운영기준)	- 정부승인 차액계약 대상 전원 계약 구매물량 할당 기준을 명확화 - 사전 자료제출 불가시 제출기한 유예 기간을 규정 - 전력거래소의 업무 수행 기준을 추가 - 차액계약 대상 발전기에 관하여 규정	에너지

9. 28.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서 살생물제품으로 관리 전환되는 제품이 있어 그에 따라 품목명을 조정 - 관리 대상 품목명 조정에 따른 심사 자료 제출 범위를 정비 - 살충제의 관리 범위 조정에 따라 주요 함유물질 규격을 삭제 - 기타 제품 중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의 정의 규정을 명확히 개정	화학 (화학물질 안전원)
9. 23.	(온실가스 측정망 설치·운영지침)	- 국가 통계자료인 도시지역 온실가스 농도의 신뢰도 제고, 품질관리 체계화를 위해 측정 지점의 선정, 자료의 생산·처리·확정 등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을 고시로 제정	기후 (국립환경 과학원)
9. 23.	(온실가스 관측연구협의체 운영규정)	- 국내 온실가스 관측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연구협의체의 운영 규정과 협의체의 기능·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예규로 제정	기후 (국립환경 과학원)
9. 18.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 기존 신재생에너지법이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재생에너지법”)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으로 분법되어 제명을 변경하고, 조문 내 신에너지 용어를 모두 삭제하며, 종전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로 변경	에너지
9. 18.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 기존 신재생에너지법이 재생에너지법과 수소법으로 분법되어 제명을 변경하고, 조문 내 신에너지 용어를 모두 삭제	에너지

9. 18. (12. 19.)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 고시)	- 인체등유해성물질 고유번호 5종의 명칭을 개정하고, 38종을 신설하며, 신규로 지정된 인체등유해성물질을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취급하는 자에 대한 화학물질관리법 준수 일자를 제시	화학 (화학물질 안전원)
9. 18.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 인체등유해성물질 고유번호 9종의 화학물질명칭을 개정하고, 38종을 신설하며, 이 규정 시행으로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27. 7. 1.까지 표시하도록 규정	화학 (화학물질 안전원)
9. 18.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가 신설됨에 따라, 이격거리의 구체적 산정방법 및 범위 등 이격거리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로 제정	에너지
9. 18.	(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운영세칙)	- 기존 신재생에너지법이 재생에너지법과 수소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운영세칙의 제명을 변경 - 각 조문 내 '신·재생에너지' 용어를 '재생에너지'로 변경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은 가능	에너지
9. 18.	(재생에너지 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 기존 신재생에너지법이 재생에너지법과 수소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의 제명을 변경 - 각 조문 내 '신·재생에너지' 용어를 '재생에너지'로 변경 - 기존 발전차액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금번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	에너지

9. 14.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 수소엔진자동차의 원활한 배출가스 인증 및 보급을 위하여 국제표준시험 방법에 따른 수소엔진자동차의 구체적인 배출가스 측정방법을 개정	대기
9. 14.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영향평가서 등 검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 전문 검토위원회의 분야 확대 및 운영주기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 - 5개 분야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서 검토의견 양식을 추가 - 연구회 운영 등 검토기관 간 협력강화를 위한 문구 개정	자연 (국립환경과학원)
9. 14. (9. 20.)	(먹는물수질 공정시험기준)	- 시료채취 용기, 세척방법, 운반온도 및 시료 추출 유무에 따른 보존기간 등 적용기준을 명확화 - 암모니아성 질소-연속흐름법 분석절차를 개선 - 잔류염소-DPD 분광법 표준용액 제조 시 기존 표준시약의 수급 불안정을 고려하여 대체 시약으로 변경	수질 (국립환경과학원)
9. 14. (9. 20.)	(소음·진동공정 시험기준)	- 소음원이 건물 내부에 설치된 경우 동일 건물 내 사업장소음 측정방법을 적용하고, 외부에 설치된 경우 규제기준 중 생활소음 측정방법을 적용하며, 기준 초과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하도록 구체적으로 표기	대기 (국립환경과학원)
9. 11.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 기관 지정)	-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기관으로 (재)한국비계기술원이 신규로 지정되어 13개 검사 기관으로 고시 개정	대기
9. 10.	(서식지외보전 기관 신규 지정 고시)	- 서울식물원을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증식사업을 수행하는 서식지외 보전기관으로 신규 지정	자연

9. 9.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 재생에너지법 시행령에 따른 공급 의무자 요건을 충족(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하는 발전사업자) 하는 씨지앤대산전력(주)(512MW)가 전력시장에 전력공급을 개시함에 따라 공급의무자로 신규지정	에너지
9. 3. (9. 18.)	(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품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 기존 신재생에너지법이 재생에너지법과 수소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관련 법률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변경하고, 종전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로 변경	에너지
9. 2.	(화학사고 조사단 구성·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	- 기존 영향조사 본조사를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단계화하여 영향조사에 포함 - 조사단의 구성·운영, 조사계획 수립, 조사 실시 및 피해산정 절차를 본조사 중심으로 정비 - 긴급한 경우 예비조사 없이 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정 - 노출 가능지역 주민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 원칙을 주민·현장대응자 조사 참여 희망자에 한해 자율화 - 생체모니터링 세부절차 등을 삭제하고, 기타 업무별 처리기준을 수록	화학
9. 2.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 유해성심사를 마친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인체등유해성물질 해당 여부 등 유해성심사결과를 반영하여 개정	화학
9. 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서 살생물제품으로 관리 전환되는 제품이 있어 그에 따라 안전·표시기준을 정비 - 차아염소산류에 대한 공통 안전·표시기준을 마련	화학

		- 어린이보호포장 적용기준 합리화 및 노출·위해 수준을 고려한 용도별 기준을 세분화	
8. 27.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 보전특별대책 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수도의 관로 설치를 위한 터널공사의 임시 폐수 배출시설 설치를 허용 - 감시물질인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로 지정	수질

III. 기후부 입법(행정) 예고 (24건)

예고기간	법령명 (행정규칙명)	주요 내용	분 야
9. 30. ~ 11. 9.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형식승인 받은 환경측정기기의 경우, 필수 검사만으로 형식승인 중복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 - 형식승인 대상에 대기배출가스 수분 측정기와 온실가스 분야를 추가 - 대기분야 선택항목 필수 장비를 확대·정비 - 수질분야 선택항목에 '퇴적물'을 추가('29~) - 측정대행업 정도관리 부적합 판정시의 처분사항을 1 차 경고 추가로 완화 - 시료 특성상 교차오염에 대한 우려가 없는 소음·진동 분야 측정업무 수행시 타 분야 차량을 공통으로 사용하도록 완화	공통
9. 23. ~ 11. 2.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햇빛소득마을 등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대에 따라, 기존 농지에서 영농활동을 지속하면서 농지 상부 공간을 활용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중 사업 계획 면적이 2 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	공통

9. 23. ~ 11. 2.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정의에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기능 보완·대체 등을 위한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사업을 추가 -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 관련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	에너지
9. 23. ~ 11. 2.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시행자가 국가의 지원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비용지원 신청서' 및 집행을 완료한 후 제출해야 하는 '지원금 집행내역서'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별지 서식 마련	에너지
9. 23. ~ 11. 2.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 재생에너지 RPS 제도 일몰을 위한 공급 의무화제도 변경,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의무자의 범위, 설비 보급 목표관리대상자 및 보급의무자의 지정 기준,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과 계약시장 관리기관의 지정 요건 등을 규정	에너지
9. 23. ~ 11. 2.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 재생에너지 계약시장 제도 입찰 및 낙찰자 결정 기준, 소규모 설비 및 통합사업자 기준, 보급목표 및 의무량 설정 방식과 계약시장 관리기관 지정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	에너지
9. 23. ~ 11. 2.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용량 10 킬로와트 이하 발전설비도 전력거래에 한하여 재생에너지 일반용 전기설비를 자가용전기설비로 분류하여 자가소비 후 잉여전력을 거래할 수 있도록 개선 - 특정 전력 시장 참여자에게 편익·효과가 귀속되는 개별 업무 및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경비 재원으로 추가	에너지
9. 8. ~ 10. 1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범위를 학술 연구 또는 보호·증식 등 기후부장관에게 인공증식 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규정	자연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 예외 대상을 규정 - 국립생태원에 국제적 멸종위기종 긴급 보호 조치 및 사육곰 보호 업무를 위탁 - 국립공원공단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관련 업무를 위탁	
9. 8. ~ 10. 1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대발생 곤충을 붉은등우단털파리 및 동양하루살이로 규정 - 대발생 곤충에 대한 방제·관리 기준을 신설 - 지자체의 장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주요 서식지 지정을 기후부장관에게 요청하기 위한 제출 서류를 규정 -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방사·이식·양도·양수 등의 허가 신청 서류 및 서식을 규정 - 서식지외보전 기관이 종의 변경 시 지정서 재발급 절차를 마련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거래 확인을 위한 자료에 사진 또는 영상 자료를 포함	자연
9. 29. ~ 10. 20.	(지하수오염 시설의 오염 평가보고서 및 정화계획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일반오염시설에 대한 정화명령체계의 법적 완결성 확보를 통한 행정 집행력 강화를 위해 지하수오염 평가보고서의 작성·제출 및 정화계획의 수립·승인에 관한 세부기준, 세부사항 등을 고시로 제정	수질
9. 23. ~ 10. 14.	(재활용가능 자원의 분리 수거 등에 관한 지침)	- 지자체에서 지침과 달리 품목·요령을 조정 시 사전에 기후부와 협의하도록 규정 - 종이팩 분리배출 체계를 정비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현황 및 분리수거량 등에 관한 분석 등의 업무를 한국폐기물협회에서 수행하도록 규정 - 전지를 분리할 수 없는 전기·전자 제품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	폐기물

9. 23. ~ 10. 13.	(수소안전기준 통합고시)	- 수소용품의 자체검사 대상 중 주문 생산 수소용품은 자체검사 의무를 준수하기 어려워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인정하는 수소용품에 대해서는 자체 검사를 생략하도록 규정 - 수소용품 수집 검사 시 '적합'의 단서 조항과 '경미 불량'의 판단 근거 규정이 유사하여 수집검사 결과 구분을 명확하게 개정	에너지
9. 23. ~ 10. 16.	(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기준)	- 설치환경을 고려하여 영점표고검정 수준점 표석의 높이를 완화하고, 표석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동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기준수위표 영점을 저수로 하상특성을 반영하여 설정하도록 기준을 변경하고, 단면측량값은 5 년 이내 최신값을 반영	수질
9. 22. ~ 10. 2.	(수문조사전담 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자원법")에 따라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을 수문조사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수문조사 전담기관 지정에 대한 규정은 폐지	수질
9. 22. ~ 10. 2.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운영 및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	- 수자원법에 따라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을 수문조사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기술원의 운영 및 관리·감독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고시로 제정	수질
9. 22. ~ 10. 12.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 기존 신재생에너지법이 재생에너지법과 수소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신에너지와 관련된 사항을 모두 제외 - 재생에너지 확인서 발급 기준을 정비하여 실질적인 전기 사용자의 RE100 참여를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	에너지
9. 21. ~ 10. 1.	(댐 상류의 범위에 관한 고시)	- 4 개 댐 상류의 7 개 소권역을 댐 상류의 범위로 정하여 댐 저수의 수질 보전을 위한 물환경 관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고시 제정	수질

9. 9. ~ 9. 28.	(정부승인차액 계약 운영기준)	- 정부승인 차액계약 대상 전원 계약 구매물량 할당 기준을 명확화 - 사전 자료제출 불가시 제출기한 유예 기간을 규정 - 전력거래소의 업무 수행 기준을 추가하고, 차액계약 대상 발전기를 규정	에너지
9. 8. ~ 9. 28.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변경 고시)	-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지형도면을 변경	수질
9. 7. ~ 9. 30.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	-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 품목 중 페트병 용기의 2027 년 이후의 재생원료 사용 의무율을 구체화	폐기물
9. 7. ~ 9. 28.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 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 유해화학물질 정의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사고대비물질'로 정비 - 소관 기관 이관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변경 - 저온저장탱크 수식 및 물질명의 불필요한 첨자를 삭제	화학
9. 7. ~ 9. 28.	(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 사업 위탁기관 지정 고시)	- 수자원 위성 관측망 구축 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의 명칭, 소재지, 위탁 받은 업무, 위탁 받은 업무의 처리 방법에 관한 내용을 고시로 제정	수질
9. 3. ~ 9. 13.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 기존 신재생에너지법이 재생에너지법과 수소법으로 분법되어 제명을 변경하고, 조문 내 신에너지 용어를 모두 삭제하며, 기관 등의 명칭을 모두 재생에너지로 변경	에너지

9. 2. ~ 9. 22.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 일 10 톤 이상 처리량을 가지는 공공 선별시설 대상으로 광학선별기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나, 타 법령 적용으로 설치가 곤란한 경우와 잔재물 내 플라스틱 혼입률 조사결과 20% 이하인 경우에는 광학선별기 설치를 의무 대상에서 제외	폐기물
-------------------	-------------------------------	---	-----

IV. 기후에너지환경 관련 의원 입법 발의 (31건)

제안일자 (제안자)	법령명	주요 내용	분 야
'26. 9. 22. (김정호의원 등 16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에너지 수요 관리 규율을 강화하고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보유한 정보를 제 3 자가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한국형 그린버튼 구축 근거 등을 마련	에너지
9. 22. (조지연의원 등 10인)	소음·진동관리법	-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기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특수성 반영 도모	대기
9. 21. (여기구의원 등 11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 현행법에 따른 부지내 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이 변경허가를 거쳐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속 운전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더하도록 규정 - 기술발전 또는 안전성에 관한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저장용량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개정	에너지
9. 18. (김석기의원 등 10인)	한국발전공사법	- 5 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하여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고, 주된 사무소를 충남도에 두도록 하며, 종전 발전공기업을의 재산과 권리·의무, 직원 및 수행 중인 사업 등을 공사가 포괄하여 승계	에너지
9. 17. (서왕진의원 등 11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후부장관은 생태계서비스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인구감소지역 내의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을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자연

		-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 조성 사업 추진실적을 서식지 규모, 핵심 생물자원 모니터링, 민감시기 이용 제한 및 수용력 산정 등 생태지표를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규정	
9. 17. (최기상의원 등 14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지역을 자연공존지역으로 발굴·등록·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 보호지역 외 지역까지 포함하는 통합적인 생물다양성 보전체계를 구축 -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지역의 보전 및 복원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거나 관리·관할 주체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 대상지역에 자연공존지역을 명시	자연
9. 17. (최기상의원 등 10인)	전기사업법	-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에 관한 기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시적인 감시·감독을 수행하는 한국전력감독원을 설립 - 전력산업 전반의 방대한 정보를 통합·관리·공개하는 전력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	에너지
9. 16. (이상희의원 등 10인)	전기사업법	-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저탄소철강기술의 도입, 설비 투자 또는 공정 전환을 추진하는 전기 사용자, 청정수소를 생산하고자 하는 전기사용자 등에게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개정	에너지
9. 11. (서왕진의원 등 12인)	전기사업법	- 3 천 킬로와트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의 허가 절차에서 하천 점용 허가, 도로 점용 허가 등 여러 인허가 사항을 의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농어촌도로 점용 허가도 함께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에너지
9. 10. (이용우의원 등	대기환경보전법	- 냉매는 높은 지구온난화지수로 대형 냉매사용기기의 관리 및 냉매회수업의 등록	대기

10인)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냉매 사용기기, 제품, 재생, 파괴 등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 - 냉매의 제조·수입·판매, 냉매사용기기·제품의 제조·수입·사용, 냉매의 회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	
9. 10. (강명구의원 등 13인)	하수도법	- 담배꽂초 등 이물질을 투기하여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 신설	수질
9. 8. (박정의원 등 10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에너지 전환 분야는 기후대응 기금으로 통합 - 석유·광물 등 자원 안보 분야는 자원안보기금으로 분리 - 에너지 전환 관련 사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기후대응기금의 용도에 에너지 전환 지원을 명확히 규정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판매 부과금 등 종전 특별회계 법정부담금의 일부와 추가적인 일반회계 전입 근거를 마련 - 종전 특별회계의 자산·부채 및 권리·의무를 차질 없이 승계하기 위한 경과조치를 마련	기후
9. 8. (박해철의원 등 10인)	수도법	- 상수원보호구역 내 허가받지 않고 건축물을 신·증축하는 등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수도법상 법정 최고형인 5 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 -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 이하의 과징금 및 1 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 현행 하위법령상 조치명령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	수질

9. 8. (박해철의원 등 10인)	하천법	- 하천에서 무허가 불법 점용 등으로 취득한 사적 이익을 적극 환수할 수 있도록 과징금 제도를 신설 - 원상회복 명령 권한과 행정조치 주체 등을 명확히 규정	수질
9. 8. (임문영의원 등 11인)	전기사업법	- 폭염·한파가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취약계층뿐 아니라 전통시장상인·소상공인·중소 제조기업 등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에너지
9. 8. (안호영의원 등 14인)	하천법	- 하천관리청이 하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갈대, 목초 등의 채취물을 농업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 채취를 위한 하천점용의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	수질
9. 8. (김미애의원 등 13인)	에너지법	- 에너지이용권 수급 자격이 확인된 경우에는 기후부장관이 직권으로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기상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추가적인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개정	에너지
9. 7. (박해철의원 등 11인)	한국발전공사법	- 5 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하여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고, 종전 발전공기업을의 재산과 권리·의무, 직원 및 수행 중인 사업 등을 공사가 포괄하여 승계	에너지
9. 7. (김기현의원 등 10인)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만든 물질·제품을 토양 또는 공유수면 등에 직접 접촉시켜 성토재·복토재 등으로 재활용한 자는 해당 재활용을 완료한 후 그 재활용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에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도록 개정	폐기물
9. 7. (정혜경의원 등 10인)	폐기물관리법	- 관할 구역 외 민간폐기물처리시설에 위탁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 사전에 통보하도록 규정	폐기물

		- '35. 1. 1.부터 생활폐기물을 원칙적으로 해당 발생지에서 처리하도록 의무화 - 생활폐기물 처리 전환계획상 감량 및 재활용 목표를 2 회 이상 연속하여 달성하지 못하거나 관외 반출이 지속되는 경우 반입협력금을 5 배 이내 범위에서 가중하도록 규정 - 지방자치단체장이 5 년마다 생활폐기물 처리 전환계획을 수립하여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규정 - 관외 반입 시 협의 및 통보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	
9. 7. (김종양의원 등 12인)	물환경보전법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거나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여 환경오염 우려를 해소한 경우에는 신규 산업단지에도 예외적으로 기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허용	수질
9. 4. (정혜경의원 등 10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에 재사용 제품의 이용 활성화 사업과 다회용기 등 재사용 제품의 사용 확대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을 명시 - 지방자치단체가 교부받은 부담금 및 가산금의 50/100 이상을 해당 용도에 계상하도록 하며, 부담금의 효력 기한을 삭제	폐기물
9. 3. (김은혜의원 등 15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1 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업무를 지자체장의 실효적인 집행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위임규정을 마련 - 1 회용 봉투·쇼핑백 등의 판매 대금을 1 회용품을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대체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도 쓰일 수 있도록 규정 -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 및 다회용기를 회수·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홍보 및 마케팅 지원을 추가 - 1 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신소재 및 친환경 포장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 대상에 포함	폐기물

9. 3. (이철규의원 등 10인)	전기사업법	- 기후부장관이 전력계통 여건 변화 및 전력수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전력계통 운영 기준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	에너지
9. 2. (우재준의원 등 12인)	전기사업법	- 전기자동차와 별도로 전기이륜자동차를 정의하도록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의 개정에 맞추어 현행법에도 전기자동차와 별도로 정의된 전기이륜자동차를 포함	에너지
9. 2. (허성무의원 등 10인)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 발전사업자들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발전설비 중 설계와 제작에 36 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장기제작설비에 대하여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기 전에도 사전 조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	에너지
8. 31. (송옥주의원 등 13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도로 하천부지의 제방 등 공공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 - 기후부장관이 공공 유휴공간의 발굴 및 현황조사,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출자·투자 및 협동조합 참여와 발전수익의 지역사회 환원을 촉진 - 공공 유휴공간의 위치와 면적, 소유·관리 주체, 발전 가능량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사·관리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	에너지
8. 31. (송옥주의원 등 13인)	하천법	- 하천관리청이 하천의 비탈면 및 그 밖의 유휴공간에 대하여 하천의 유수 소통, 홍수 방어, 제방 및 하천시설의 안전성과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수질
8. 31. (송옥주의원 등 14인)	에너지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냉방·난방 복지를 확대하고, 냉방·난방 기기 설치·교체 및 냉방·난방 에너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구체화	에너지

8. 31. (이훈기의원 등 10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에너지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에너지 사용기자재의 사용 제한 등의 조치를 별도의 요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냉난방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에너지손실 감소 등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 - 에어커튼 등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설비의 설치·보급 비용을 지원	에너지
8. 28. (이용우의원 등 10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이용 합리화, 물의 재이용 및 자원의 순환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통합허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통합허가 대행업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규정 -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통합

V. 기후부 인사 동향

발령일자	대상자	前 근무지	現 근무지
'26. 9. 28.	조강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 장
9. 22.	고위공무원 문양택	에너지전환정책실 전력산업정책관	공론화지원단 단장 겸임근무
	부이사관 박성진	원전산업정책관실 원전산업정책과장	공론화지원단 부단장 겸임근무
9. 14.	고위공무원 송호석	물관리정책실 수자원정책관	물관리정책실장
	고위공무원 김영우	대변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고위공무원 김은경	물관리정책실 물환경정책관	대변인
	고위공무원 조현수	환경보건국장	물관리정책실 물환경정책관
9. 14.	부이사관 차은철	운영지원과장	고위공무원 전북지방환경청장
	부이사관 한준욱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과학기술서기관 권병철	수소열산업정책관실 열산업혁신과장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과학기술서기관 김범직	물이용정책관실 물산업협력과장	수소열산업정책관실 열산업혁신과장
	과학기술서기관 김보미	원주지방환경청 하천국장	물이용정책관실 물산업협력과장
	서기관 김나승	녹색전환정책관실 비도로부문전동화TF	원주지방환경청 하천국장
	부이사관 고대현	자연보전국 국토환경정책과장	자연보전국 자연생태정책과장
	부이사관 정환진	자연보전국 자연생태정책과장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
	서기관 현성호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	대기환경국 교통환경과장
	수석전문관 이경빈	대기환경국	환경보건국

		교통환경과장	화학안전과장
	과학기술서기관 손명균	환경보건국 화학안전과장	자연보전국 국토환경정책과장
	과학기술서기관 김무연	정책기획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국조실 파견 (기후대응위)
	서기관 이경훈	전기위원회 사무국장	부이사관
	과학기술서기관 맹학균	기후부	부이사관
9. 1.	과학기술서기관 조영희	영산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장
	과학기술서기관 이보영	수자원정책실 물관리총괄과	영산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과학기술서기관 김양동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장	기후에너지환경부 (영국 교육훈련)
	서기관 김영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무조정실 전 출

관련 구성원

오정민

변호사

T 02.3404.6529

E jeongmin.oh@bkl.co.kr

구도형

변호사

T 02.3404.0857

E dohyung.koo@bkl.co.kr

방종식

외국변호사 (미국 New York주)

T 02.3404.7588

E jongsik.bang@bkl.co.kr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뉴스레터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위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